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편드명 : 트러스톤 벨류웨이 소득공제 중권자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	<p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 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	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
	①(생략)	①(현행과 같음)

항에 따른 변경	<p>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제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(생략)</p>	<p>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제23조(판매가격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23조(판매가격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제25조(판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2영업일</u>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3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4영업일</u>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4영업일</u>)에 수익자</p>	<p>제25조(판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2영업일</u>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3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4영업일</u>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4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</p>

	<p>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(생략)</p>	<p>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	<p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 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~ ③(생략)</p>	<p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 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~ ③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	<p>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대차대조표</u> 2. ~ 3. 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재무상태표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
	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④(생략)</p>	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④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투자신탁(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	<p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투자신탁(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<u>으로</u>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</p>

	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	수 있다는 사실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선택계약은 2022년 10</u> <u>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